

의안 번호	2462	【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】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# 1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25. 8. 22.(금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8. 22.(금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9. 8.(월)

### 2. 제안이유

- 2025. 12. 31.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니어클럽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시니어클럽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
- 나. 위탁기간 : 2026. 1. 1. ~ 2030. 12. 31.(5년)
- 다. 위탁사무의 내용
  - 시니어클럽 운영 및 시설의 관리 전반
  -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기능 및 역할 수행, 우수사례 발굴
  - 그 밖에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- 라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·선정
- 마. 수탁자격 : 울산광역시 중구 내에 소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
- 바. 연간 소요예산 : 415백만원 정도(인건비 354, 운영비 51, 사업비 10)

## 4. 근거법규

-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
-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시행규칙 제21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위탁 동의안은 시니어클럽 운영 위탁기간이 2025. 12. 31.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중구의회 동의를 받아
- 시니어클럽 운영 및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관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·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# 근거법규

##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9조(노인일자리전담기관)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5조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(이하 “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·단체에 위탁해야 한다.

##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위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

- 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 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
-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

##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**제6조(승인 및 동의)**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(최초위탁, 재위탁, 재계약 포함)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,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,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위탁기간 1년 이하의 1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
2. 청소, 방호 등 연례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

## 붙임 1 시니어클럽 현황

### □ 시니어클럽운영 개요

- 시설명: 중구시니어클럽
- 위치: 태화로 19, 2층(하반기 이전 예정)
- 시설규모: 136㎡ / 임대(계약기간: 2023. 1. 1.~2025. 12. 31.)
- 운영법인: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사람들(이사장: 손경숙) ※ 관장: 서정숙
- 위탁기간: 2021. 1. 1.~2025. 12. 31.(5년)
  - 기존 기한의 정함이 없이 지정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「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」 제21조의 2(시설의 위탁)에 따라 위탁 체결 필요
- 직원 수: 5명(관장 1, 실장 1, 과장 1, 팀장 2) ※ 전담인력(기간제) 20명
- 지원예산

(단위:천원)

연도	지원예산				비고
	계	인건비	사업비	종사자수당	
2025	361,200	342,320	10,000	8,880	시구 210,949 150,251

### □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황

시설명	연도(년)	사업단수(개)	참여인원(명)	사업비(백만원)	사업유형
중구 시니어 클럽	2025	37	2,201	10,91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익활동</li> <li>• 역량활용</li> <li>• 공동체사업단</li> <li>• 취업지원</li> </ul>

#### ○ 주요성과

- 2022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및 최우수상 수상
-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복수유형 우수상 수상 및 인센티브(15,000천원)
-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복수유형 우수상 수상 및 인센티브(15,000천원)

- 향(香)이 가득한 정(庭)캉스
  - 빛과 음악의 정원
  - 꽃과 이웃의 정원
- 정(庭)이 넘치는 정(情)다운 마을
  - 정원마을 놀이터 조성
  - 정다운 정원마을 이음사업

#### 4. 근거법규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의견청취의 건은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에 따라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광역시장의 승인 신청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